

食品行政指導와 衛生管理人の 責務

김 병 태 / 보사부 위생관리과

1. 의의

오늘날 고도의 경제성장과 첨단기술의 발달은 식품산업도 예외가 아니어서 다양한 가공식품이 개발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식품에 의한 건강장애의 요인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식품의 안전성 제고는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하겠다.

음식물의 섭취는 생명유지, 신체발달, 체력향상 및 건강증진에 필요하나 오히려 이로 인하여 건강 장애의 요인이 될 때는 그 근본의의를 상실케 되므로 지도 단속과 안전관리는 더욱더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1962년 1월 12일 법률 제 1007호로 식품위생법을 제정·공포하면서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게 되었다. 이 법률이 제정, 공포되기 전에는 식품·첨가물·기구 및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위행감시와 식품위생관리인을 두는 제도는 없었다. 그러므로 식품위생법상 왜 식품위생감시와 위생관리인을 두도록 했는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위생감시의 제도는 지도·단속차원에서 볼

때 영업자가 법률규정에 위반을 한 사실을 규명하거나 위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령하거나 지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영업자에게는 법률에서 정한 제규정을 준수하여 식품 등을 제조·가공·조리·운반·진열·판매하므로서 식품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식품 등의 질적관리를 도모하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이와 같은 질적 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 전문적 위생관리 및 품질관리를 수행하게 하였다.

위생감시는 위생감시원이 직무를 능률적으로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생감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도·단속업무를 행한다.

그러나 보건사회부를 비롯하여 전국의 1,500여명의 위생감시원만으로는 31,744개소의 식품등의 제조·가공업소와 30만여 품목을 일일이 관리할 수 없으므로 위생관리인의 직무를 제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한 것이므로 감시업무의 범위는 위생관리인의 직무와 직접관련이 있다.

위생감시요령은 식품위생법규상에 제규정의

이행여부를 행정적 또는 기술적으로 지도·감독하는 것으로서 위생관리인 역시 상대적으로 잘못된 것이 적발되지 아니하여야 안전한 식품위생관리를 수행했다고 인정되므로 위생관리인의 직무요령 역시 감시요령에 의거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관능적으로 외관 판단에 의존하여 식품을 선택하나 위생적인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은 갖지 못하므로 식품의 안전성 여부에 대하여는 거의 무력하다.

따라서 식생활의 안전성을 식품을 취급하는 영업자를 믿을 수 밖에 없으므로 이들에게 높

은 수준의 품질관리와 사회적 사명감을 강조하게 하는 것이며 또한, 식품의 안전성을 원료생산부터 최종 소비자의 소비단계까지 하나의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중간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결함이 생기면 소비자의 건강을 위태롭게 하여 전체가 무너져 버리므로 최종 식품의 과학적인 품질보장을 위하여 식품 전반에 대한 감시와 안전관리 지도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므로 우선 위생감시요령부터 기술하고 위생관리인의 직무를 기술코져 한다.

2. 위생감시 요령

가. 식품제조업소 점검

점검항목	착안사항	세부점검내용
1) 혼가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 혼가증 ◦ 품목 혼가증 ◦ 혼가관계 신청서류 ◦ 혼가등의 변경사항 ◦ 제조방법 설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가유무 ◦ 무 혼가 품목 제조여부 ◦ 6월 이상 무단 휴업여부 ◦ 영업장소 이전여부 ◦ 영업시설의 구조 또는 작업장 면적 변경여부 ◦ 영업 또는 품목 혼가 시한부 조건 이행여부 ◦ 품목 혼가사항 변경여부 (제품명·원재료·성분 배합비율 등)
2) 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구입장부 ◦ 원료보관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 혼가 원료구입 및 사용여부 ◦ 원료별 구분보관 여부 ◦ 부패 변질 여부 ◦ 이물질 혼입 또는 첨가우려 여부 ◦ 유독·유해물질 함유 또는 부착우려 여부 ◦ 병육 사용여부 ◦ 식품첨가물 혼가 및 표시제품 사용여부 ◦ 고시한 화학적 합성품이외의 합성품 및 제제 사용여부 ◦ 원료보관 상태
3) 첨가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구입장부 및 사용장부 ◦ 혼용 및 사용기준의 제품 사용 	
4) 기구·용기·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보관장소 ◦ 검사성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검사 - 자가품질 검사기록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기구·용기·포장의 사용여부
5) 품질관리 및 개인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관리인 선임 사항 ◦ 자가품질 검사 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관리인 선임여부 ◦ 위생관리인의 상시근무 ◦ 원료 또는 기구·용기·포장의 구입시마다 자가품

食品行政指導와衛生管理人の責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험기관 ◦ 생산일지 ◦ 원료구입장부 및 사용장부 ◦ 생산실적보고서 ◦ 전강진단실시 및 진단결과 조치 ◦ 위생교육 ◦ 원재료 배합비율표 ◦ 종업원관리 ◦ 표시기준 일반사항 ◦ 허위표시·파대광고 및 과대포장 ◦ 식품등 표시기준 일람표 ◦ 공통시설기준 및 업종별 시설기준 적합여부 ◦ 제조공정도 ◦ 작업장 위생상태 점검 ◦ 식품 및 첨가물 제조가공업소 ◦ 각종 신고사항 ◦ 행정제재 처분 ◦ 기타 지시사항 ◦ 제품검사 합격증지 또는 합격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검사 실시 여부 ◦ 제품별 2주마다 1회이상 자가품질 검사 실시 여부 ◦ 수도물이 아닌 물의 음용적부시험 1년마다 실시 여부 ◦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작성 여부 ◦ 미검사 축산물을 식품으로 제조사공 여부 ◦ 생산실적보고 이행여부 ◦ 2년이상 미생산 품목 ◦ 전강진단 실시여부 및 부적격자 조치사항 ◦ 위생교육 수료 및 종업원 전달교육 실시 ◦ 성분배합비율 임의변경 여부 ◦ 제조기준의 적합여부 ◦ 우유와 산양유의 동일제조 시설에서의 처리·가공 여부 ◦ 생산적 종업원의 개인위생관리 ◦ 위생교육 실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2) 이행여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 이행여부 ◦ 별표참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8) ◦ 허가받은 제조공정 및 방법에 의한 제품제조 여부 ◦ 기계·기구류의 세척·소독 및 관리상태 ◦ 제조기구 및 용기·포장 보관관리 상태 ◦ 기계류 작동여부 ◦ 원료 및 제품의 위생적 보관 관리상태 ◦ 시행규칙(별표 12) 이행 ◦ 시행규칙(별표 13) 이행 ◦ 휴폐업 ◦ 재개업 ◦ 업소명 명의, 변경 ◦ 위생관리인 선임 및 변경 ◦ 행정처분사항 이해 ◦ 지시사항 이행 ◦ 제품검사 후 불합격된 제품의 판매여부 ◦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 ◦ 수입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수입 - 표시사항 이행여부
6) 표시사항			
7) 위생시설			
8)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상태			
9) 준수사항			
10) 신고사항 및 행정처분 등 지시사항			
11) 기타			

나. 제품수거 검정**1) 기관별 중점수거검사 대상식품 선정 실시**

- 국민 다소비식품 중점관리
- 일반식품은 시·도가 중점 관리하되 계절적 성수식품등에 대하여는 필요시 보건사회부가 직접 수거검사 실시
- 기관별 중점수거 검사대상

구 분	보건사회부	시·도
국민다소비식품	우유, 식용유지, 유산균음료, 건강식품, 국산차, 라면, 소세지, 햄, 버터, 꿀, 수입식품	콩나물, 두부, 생선, 분말쥬스, 장류, 도시락, 냉면육수, 고추가루·후추가루, 도라지·더덕, 딸기, 포도, 순대, 턱주·약주, 두유, 쥐포, 어묵, 식용얼음, 빙과류, 튀김류(유탕), 묵류
농산물	곡류, 야채류, 과실류	곡류, 야채류, 과실류
해산 어·패류	해산 어·패류	해산 어·패류
기타식품	냉동식품 등 계절적 성수식품 등에 대하여 필요시 수거검사	일반식품, 용기·포장류

◦ 식품점책업소 및 식품조리·판매업의 식품 또는 위생용품 등 수거검사는 시·도(시·군·구)의 업소 점검시 병행실시.

2) 수거검사 요령

- 식품·용기·포장, 위생용품은 업종별, 품

목별로 월별수거계획을 수립, 년중 수거검사하여 검사기관의 능력을 판단하여 시·군·구별 수거진수등 조정.

◦ 농산물, 해산 어·패류는 계절별, 생산종류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수거검사.

◦ 축산물의 항생물질등 유해물질 검사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수거검사.

◦ 중복 수거지양

— 업종별, 품목별 수거대상을 순차적으로 수거

— 특정제조업체에 편중된 수거지양

— 의심스러운 제품의 신속·정확한 검정을 위하여 사전에 검사기관과 협의(수거물량등)

— 유통식품 수거시는 유상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사전확보

3) 수거회수

◦ 국민다소비식품은 월 1회이상 수거검사 실시

◦ 기타 유통식품은 분기별 1회이상 수거검사 실시

◦ 농산물은 월 1회 이상 수거검사 실시

◦ 해산 어·패류의 중금속, 축산물의 항생물질 수거검사는 년 2회 이상 수거검사 실시

4) 검사항목

◦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의함.

◦ 표시대상 첨가물의 사용 및 잔류량 초과여부

◦ 표시량과 실량의 오차여부

(참고) 기관별 검사능력 비교

(‘90.12. 현재)

기관별	검사항목	성분 규격	잔류 농약	방사능	아플라 톡신	항생 물질	흘몬체	중금속
국립보건원	○	○	○	○	○	×	○	
시·도 보건환경연구소	○	○	×	△	×	×	○	
식품연구소	○	○	×	○	×	×	○	

* △ : 장비 미비, 흘몬체 : 검사방법 미개발.

5)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의 조치

◦ 폐기대상 등 부적합제품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15조 규정에 따라 조치하게 되, 검사기관은 보사부, 특별시, 직할시, 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군·구에 즉시 FAX 등을 이용 신속하게 통보하여 일제히 수거폐기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련 단체 및 언론매체등을 활용 홍보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책을 강구

품영양학, 위생학 분야 등의 학과를 이수하여 졸업한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 외국에서 위와 같이 동등한 자격을 얻었거나 동등한 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사회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 다만, 관리인중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제조업, 유가공품제조업, 식육제품 제조가공업, 인삼제품제조가공업에 종사하는 식품위생관리인의 자격범위는 아래와 같다.

3. 위생관리인의 역할

(1) 위생관리인의 자격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의 자격은 1종 식품위생관리인과 2종 식품위생관리인으로 구분한다.

◦ 1종 식품위생관리인의 자격

◦ 위생사, 위생시험사 또는 식품제조·가공기사, 수산제조기사, 영양사
◦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의학, 약학, 수의학, 축산학, 축산공학, 수산제조학, 농산제조학, 농화학, 식품가공학, 식품화학, 식품제조학, 식

제조업	식품위생관리인의 자격
◦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제조업	◦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화학, 농화학, 축산가공학, 약학분야
◦ 유가공품 제조업 식육제품제조가공업	◦ 수의사
◦ 인삼제품제조가공업	◦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화학, 농화학분야, 식품제조가공기사, 영양사, 품질관리사, 약사

◦ 2종 식품위생관리인의 자격

◦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이상의 학교

종류	업종(제조·가공업)	범위
1종	◦ 과자류, 당류, 아이스크림, 유가공품, 식육제품, 어육, 연제품, 절임식품류, 김치제조, 통병조림, 전포류, 두부류, 식용유지 면류, 다류, 청량음류, 보존 음료, 인스탄트식품,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조미식품, 식품가공, 식용얼음, 도시락제조, 인삼제품, 첨가물	◦ 상시 2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영업자 ◦ 통·병조림제조업 ◦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제조업 ◦ 유가공품제조업 ◦ 식육제품제조업 ◦ 인삼제품제조가공업 ※ 특례규정(시행규칙 제 38조) ◦ 동일장소에서 2이상의 제조가공업 또는 첨가물제조업 허가업소로서 종업원수가 모두 50인에 미달하는 때
1종 또는 2종	위와 같음	◦ 상시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영업자
2종에 갈음하여 보사부령이 정하는 위생교육을 이수한 자를 둘 수 있다.	◦ 절임식품제조업 중 도·소매업 진흥법에 의한 시장내 위치하는 영업 ◦ 암착시용유지제조업 ◦ 임가공업 ◦ 면류제조업(인스탄트면류 제외)	◦ 식품위생관리인이 되고자 하는자에 대한 사전위생 교육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되 12시간으로 한다.

에서 화학공업, 식품공업, 수산가공, 냉동식품, 통조림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자

(2)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할 업종

식품위생법시행령 제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할 업종과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3) 식품위생관리인의 직무

식품 등 제조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제조 또는 가공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앞의 제 2항 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할 영업소에 식품위생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정지 1월의 행정제재 처분을 받는다.

식품위생관리인은 그 식품 또는 첨가물의 제조·가공업에 종사하는 자가 식품위생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또한 제품 및 시설의 위생관리를 하여야 한다.

식품위생관리인을 둔 영업자는 앞의 위생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따라서 식품위생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제재 처분을 받게 된다.

식품 등 제조가공업의 영업자가 식품위생관

리인을 선임하거나 또는 식품위생관리인을 해임하고 그 영업의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때에는 1차에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제재 처분을 받는다.

다음은 식품위생관리인의 권리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게 하기 위한 중요 준수사항이다.

가) 원료검사 및 제품의 출하전 검사 식품위생관리인은 원료채취, 선별 및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여 부패, 변질, 이물질 혼입, 병육,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합성품등의 원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원료검사를 한 뒤에는 제품별 제조공정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양질의 제품을 제조한 뒤 생산제품에 대한 자체 품질검사를 2주에 1회이상 반드시 실시하여 병원미생물 오염 등과 같은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생관리인은 원료구입장부와 사용장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나) 사용하는 기구, 용기와 포장의 기준 및 규격검사

현재 우리나라의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은 합성수지제 기구 및 용기, 포장 등 11종의 규격 및 기준에 이어 에칠렌테레프틸레이트 수지제와 금속관의 기준 및 규격을 신설 고시하였다.

기구와 용기, 포장은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 포장과 식품 또는 첨가물에

〈참고〉

식품 등 원료구매 사용장부

원료구입량						원료사용량					
일자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원료검사 결과	일자	품명	규격	단위	제 품 생산량	제 품 검사결과

접촉되어 이에 유해한 영향을 줌으로써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 포장과 식품 또는 첨가물에 접촉되어 이에 유해한 영향을 줌으로써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 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수입,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거나 영업상 사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사용하는 기구와 용기, 포장은 식품 공전 제6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함으로 사용전 반드시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완전하고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표시기준 및 광고의 적합여부 확인

제품의 출하전 검사는 표시기준에 적합하거나 허위표시 등 이상유무를 철저히 검사한 후 표시기준 위반사항이 있으면 이를 판매하지 아니한다. 또한 식품 및 첨가물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제품중에 함유된 성분과 다른 내용의 광고,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화학적 합성품의 경우 그 원료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처리

위 가) 항을 원료검사 및 제품의 출하전 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제품이 식품 등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한 제품은 자체 폐기 조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함량부족으로 사료용 또는 공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그 근거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처분이 가능하며 표시기준 등 위반은 명백하게 정정 또는 수정하여 기준에 적합한 것을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시험결과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1년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마) 생산 및 품질검사일지의 작성비치 생산일지 및 품질관리 일지의 작성비치는 매우 중요하다. 제조업소에서 생산계획에 의거 모든 제품을 생산할 때에는 품목별, 라트(Lot)별

생산량을 명확히 기입, 유지하고 품질검사한 실적을 제품명, 시험검사일, 시험분석내용, 검사결과 및 검사원의 성명 등 구체적으로 품질 관리 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바) 종업원의 건강관리 및 위생교육

① 종업원의 건강관리

건강관리는 본 규정의 준수를 위한 외부적 효과도 중요하지만 자기자신의 건강유지와 생명의 연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여기서는 앞에서 말한 외부적 효과를 나타내는 힘이 더 강하다.

한 종업원의 건강이 나빠 다른 사람에게 그 질병을 전파한다면 그 보다 더 나쁜 일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집단생활속에서 건강한 다른 종업원들에게 질병을 전염시키게 되거나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에 오염되어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매개체가 되기 전에 이를 막아야 함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치료해야 한다.

그 대상은 식품 또는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자로 한다.

다만, 완전포장된 식품 또는 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 하여도 된다.

영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감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하며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그 질병의 종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전염병중 소화기계 전염병

◦ 전염병예방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3종 전염병중 결핵 및 성병

◦ 피부병, 기타 화농성 질환

◦ B형 간염

② 위생교육

식품위생관리인 교육은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식품위생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또는 식품위생관리인이 된 후 보건사회부장관이 한국식품공업협회장에게 위탁하여 12시간의 식품위생시체, 개인위생, 식품첨가물의 품질관리 및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으면 된다.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종업원에 대한 교육은 위생교육을 받은 영업자 또는 위생관리인이 실시되어 종업원은 1월 1회 1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영업자는 당해 업소의 관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서 매년 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위생관리인은 매년 8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과태료 부과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분한다.

-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켰을 때

-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켰을 때

- 영업자가 위생관리인을 선임하고 그 영업의 허가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영업자는 식품 및 첨가물의 생산실적 등을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업시

설이 시설기준에 위반되어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개수를 명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과태료 부과·징수

① 과태료는 행정질서법의 일종으로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과하는 경우이다. 즉 신고, 보고(등록 서류비치, 장부기재) 등의 의무위반과 같이 간접적으로 행정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 제재이다. 따라서 식품위생법상 과태료 부과·징수는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행한다.

(3) 이의 제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동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 한다.

(4) 과벌절차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자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한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과태료도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또는 지원)에서 부과한다.

(5)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에 특례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5. 행정제재처분 등

(1) 행정제재처분의 적용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별표15)을 참조하여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과징금 부과 및 처분

① 처분대상

-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품목제조 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2,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

② 과징금 부과처분 제외 대상

- 법 제6조(기준,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합성품의 판매 등 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 제5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때(법 제65조 제1항)

- 규칙 제42조의 [별표13] 식품접객영업자 및 식품조리, 판매영업자의 준수사항중 제7호, 제8호, 제14호, 제15호 및 제32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위제 31150-7802호, '89. 6. 14)

- 규칙 제53조 별표15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동일사항의 3차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행정처분 기준 I. 일반기준중 제7호 참조)

- 규칙 제53조 [별표15]의 행정처분기준 II. 개별기준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위반사항이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때에는 처분관청의 판단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제1호중 가, 다, 라, 마, 바목에 해당할 때
- 제2호에 해당하는 때
- 제4호중 가목에 해당하는 때
- 제7호중 자목에 해당하는 때
- 제10호중 마목 및 차목의 (1)에 해당하는 때

③ 과징금 산정기준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8조 별표 과징금 산정기준에 의거 과징금액을 산정하며 영업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년도의 1년간의 총매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품목 제조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하는 달 전의 최근 3월의 총매출 금액에 4를 곱하여 산출한다.

행정제재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원하는 경우에는 청문서에 의한 의견과 대상사업종 및 품목의 영업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1년간 매출액 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 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 미 납부에 대한 조치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 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⑤ 과징금 사용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을 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되며 기름은 다음 사업에 사용한다.

- 영업자의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산업

-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 보건사회부장관이 식품위생에 관하여 조합, 연합회 및 협회에 위탁하는 사업 등

(3) 벌칙적용의 특례

식품위생법상의 행정처분은 일정한 기준 및 규칙에 위반하여 행정처분으로 식품위생법상의 목적을 달성할 때, 그 행위 자체가 개준의 정이 있을 때 처분에 그칠 경우가 전반적이나 그 행위 자체가 고의든 과실이든 간에 식품등이 인체에 해를 주었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제조, 판매한 경우에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식품위생법의 벌칙에 의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별표] 식품등표시기준일람표

* 아이스크림류(분말제외), 빙과류, 설탕, 식용얼음, 과자류중 점류는 유통기한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첨가물제조업 허가를 받아 제조하는 첨가물은 제조년월일만 표시할 수 있다.